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방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교부금을 지방소비세에서 별도로 시·군·자치구에 보전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중복으로 전출되지 않도록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시 해당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전환사업 보전분 지방소비세액 제외(안 제36조의2)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정교부금 중복 계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나. 지방소비세 세입처리 특례 규정(안 제47조)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

수입'이 아닌 '지방세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 ----- ----- ----- ----- ----- -----.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2.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 ----- ----- ----- -----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 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분되 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 수입으로 구분한다. ②·③ (생략)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 호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4 호-----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705